해외진단

일본의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동시송신등 권리처리 원활화 제도 도입과 영향

권용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양대학 교수

목차

- 1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촉진과 저작권법 개정
- 2 2021년 5월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3 2021년 5월 개정 저작권법의 영향
- 4 마치며

요약

이 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방송 콘텐츠 전략을 고민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일 본의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권리처리 원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5월 개정 저작권법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영향을 살펴본다. 일본 정 부는 방송 동시송신등이 시청자의 편의성 향상이나 콘텐츠 산업 발전 등의 관점에 서 의의가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 등 권리처리의 신속 · 원활화를 도모하는 저작 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방송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개별 과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시청자 · 방송사업자 · 창작자 모두의 이익을 목표로 선 제적이고 과감한 대응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 등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 방송 콘텐츠 제작 · 유통 촉진과 저작권법 개정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을 촉진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나 관련 상품의 수출 확대와 같은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콘텐츠가 더 널리 시청될 수 있도록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유통 촉진을 중요 과제로 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① 방송 콘텐츠 등의 효과적인 인터넷 송신에 관한 대처, ② 방송 분야의 시청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③ 방송프로그램 동시송신에 관계된 권리처리 원활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등으로 시청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동시송신등(동시송신, 따라보기 및 다시보기)을 대처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였다. 고품질 콘텐츠의 시청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시청자의 편의성 향상이나 콘텐츠산업 발전·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에는 대량의 저작물이 이용되다 보니 동시송신등을 할 때 저작권 처리를 할 수 없어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등 권리 처리상의 과제가 존재하였다.

이처럼 방송프로그램 동시송신등을 추진할 때 저작물을 좀 더 신속·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다.²구체적으로는 2018년 이후 규제개혁실시계획이나 지식재산추진계획 등에서 차례로 해당 문제를 다루었고, 총무성이 2020년 8월 「방송 콘텐츠 동시송신등에서의 권리처리 원활화에 관한 방송사업자의 요청 정리」를 문화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문화청은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기본정책소위원회에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권리처리 원활화에 관한 위킹팀」을 설치하였고, 워킹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분과회가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권리처리 원활화에 관한 위킹팀」을 설치하였고, 워킹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분과회가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권리처리 원활화에 관한 보고서」(2021년 2월 3일)를 정리하였다.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은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¹⁾ 総務省、「令和5年版 情報通信白書: 新時代に求められる強靱・健全なデータ流通社会の実現に向けて」(2023)、200~202頁、(총무성、「2030년판 정보통신백서: 새 시대에 요구되는 강인하고 건전한 데이터 유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2023)、200~202p)

^{2)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은 국가 정책의 하나로서 강하게 요구된 한편, NHK나 민간방송사 등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 2021년 5월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2021년 5월 26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같은 해 6월 2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1) 도서관 관계 권리제한규정 재검토와 (2)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권리처리 원활화[① 권리제한규정 확충, ② 허락추정규정 창설, ③ 레코드(음원)·레코드 실연(음원에 수록된 가창·연주) 이용 원활화, ④ 영상 실연 이용 원활화, ⑤ 재정제도 확충]이다. 3 아래에서는 이 글의 주제를 고려해 (2)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권리처리 원활화를 중심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1) 동시송신등의 정의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실무 현황을 반영해 동시송신등을 규정하였다(제2조 제1항 제9호의7). 동시송신등이란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의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 포함) 중에서 ① 방송 후 1주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방송 간격이 일주일을 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문화청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 ②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③ 문부과학성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식의 복제 방지·억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나 많은 국민이 간단히 시청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서 문화청 장관이 총무대신과 협의해 정하는 것 및 특정 입력형 자동공중송신 4은 제외된다). ②의 요건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을 수 없어 영상을 교체하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동시송신등을 할 때 CM(Commercial Message, 방송광고) 교체를 하는 경우다. 상기 정의에 따라 동시송신 외에 「따라보기」(프로그램 방송 종료 전에 송신이 이루어지는 건)나 프로그램 방송 후 다음 방송 시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다시보기」가 방송 동시송 신등에 포함되었다.

³⁾ 池村聡, "放送番組のインターネット同時配信等(1): 権利制限規定の同時配信等への適用拡大, 許諾推定規定", 「ジュリスト」2021年 12月号(有斐閣, 2021); 龍村全, "放送番組のインターネット同時配信等(2): レコード・レコード 実演及び映像実演の利用円滑化等", 「ジュリスト」2021年 12月号(有斐閣, 2021). (이] 에 무라 사토시,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전송등(1): 권리제한 규정의 동시 전달 등에 대한 적용 확대, 허락추정규정", 「출리스트」2021년 12월호 (유비각, 2021); 루무라 전,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전송등(2): 레코드・레코드 실연 및 영상 실연의 이용 원활화 등", 「출리스트」2021년 12월호(유비각, 2021)

^{4)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시에 일정 조치가 마련된 IP 멀티캐스트 방송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9호의6).

참고로 방송 동시송신등의 정의에는 지역적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방송대상지역(방송법 제91조제1항제2호)을 넘어선 동시송신등도 방송 동시송신등에 포함된다. 그 밖에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 전송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뿐 아니라 라디오 방송이나 위성방송 등의 동시송신등도 저작권법상 동시송신등에 포함했다. 다만, 유료 전송 서비스나 음악전문 채널의 동시송신등은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청 장관과 총무대신이 협의해 제외하였다.

2) 주요 개정 내용

(1) 궈리제한 규정의 확충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 전에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방송」 하는 것을 인정한 권리제한 규정이 복수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학교 교육프로그램 방송 등(제34조 제1항),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중전달 등(제38조 제3항), ③ 시사 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 등(제39조 제1항), ④ 정치상 연설 등의 이용(제40조 제2항), ⑤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제44조 제1항), ⑤ 방송을 위한 실연의 고정(제93조 제1항) ⁶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방송은 해당되지 않아⁷ 방송사업자 등이 동시송신등을 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⁵⁾ 종래 방송·유선방송 사업자는 적법하게 방송·유선방송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기 방송·유선방송을 위해 자기의 수단 또는 해당 저작물을 같이 방송·유선방송할 수 있는 다른 방송·유선방송 사업자의 수단에 의해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었다(제44조제1항 및 제2항).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은 방송·유선방송 사업자가 방송 동시송신등을 위해 하는 일시적 고정을 권리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송·유선방송 사업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방송 동시송신등사업자가 적법하게 방송 동시송신등을 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기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방송·유선방송 사업자의 수단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것도 새롭게 인정하였다(동조 제3항).

⁶⁾ 종래 실면의 방송에 관해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는 그 실연 방송을 위한 녹음·녹화를 할 수 있었는데(제93조 제1항),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은 방송 동시송신등을 위한 녹음·녹화를 새롭게 인정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방송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권리제한 규정에 따라 방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 ⑤의 제44조가 준용된다(제102조 제1항).

⁷⁾ 참고로 저작권법은 방송과 송신이 일체화한 '공중송신권'(제23조 제1항)이라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방송권'이나 '자동공중송신권'으로 권리를 세분화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저작권등관리시업법에 따라 관리사업자가 설정하는 '이용구분'에 관한 기준이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도 저작물의 이용 구분으로서 복제나연주 등과 함께 '공중송신'이 규정되어 있을 뿐 방송이나 자동공중송신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방송등'과 '인터랙티브 전송' 등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동시송신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방송사업자 등은 기본적으로 권리처리 담당자를 두고 있었지만, ⁸ 한정된 시간과인력, 비용 등으로 동시송신등에 필요한 권리처리를 원활히 진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⁹ 이러한 실무적 애로와 시청자의 편의성 향상, 콘텐츠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위 ①내지 ⑥의 적용 범위를 「방송 + 방송 동시송신등」으로 확대하였다. 참고로 상기 ② 이외의 규정은 권리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용 형태에 방송 동시송신등을 추가한 것이고 행위 주체가 방송사업자 등으로 한정되는 것인 한편, ②는 수신자 측의 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방송 등의 수신자가 널리 행위 주체가 된다. ¹⁰ ②의 경우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의 본래 취지인 방송 동시송신등의 원활한 추진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 보호 관점의 문제도 지적 ¹¹되었지만, 방송 동시송신등의 보급·정착에 일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권리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¹² 등을 이유로 적용 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었다(다시보기 제외 ¹³).

⁸⁾ 방송사업자 92.3%는 5인 미만의 담당자를 두고 있고 있으며, 20인 이상의 담당자를 둔 방송사업자는 1.1%에 불과하였다(放送コンテンツの制作・流通の促進に関するWG事務局,「取りまとめ骨子(案)」(令和5年8月9日), 73頁).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의 촉진에 관한 WG사무국, 「정리골자(안)」(2023년 8월 9일), 73p)

⁹⁾ 동시송신등에 필요한 권리처리가 어려운 배경에는 ①한정된 시간 내에 권리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 ②대량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송신에 관계된 권리를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인터넷 송신 관련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 등이 있었다.

¹⁰⁾ 池村聡, 前掲注(3). (이케무라사토시, 전게주(3))

^{11)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 전 규정을 보면 ①방송·유선방송되는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 전달할 수 있고(제38조제3항제1문). ②통상의 가정용 수신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 등이라도 공중 전달이 가능하였다(동항 제2문). 그런데 최근 수신장치가고성능화되는 상황에서 가전제품 판매점 등에서 간단히 입수할 수 있는 것이면 즉시 '통상의 가정용 수신장치'라고 평가해도 되는지 문제가 지적되었다(②관련). 워킹팀의 의견 수렴 시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나왔다.

¹²⁾ 동시송신은 어디까지나 방송을 실시간 송신하는 것이고, 공중 전달의 경우에는 방송의 대체로서 동시송신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므로 권리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정리가 이루어졌다.

¹³⁾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영리 무료로 실시하는 퍼블릭 뷰잉(Public Viewing)에서 동시송신이나 따라보기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나 음식점에서 컴퓨터나 태블릿 단말기를 이용해 방송프로그램 동시송신이나 따라보기 방식으로 방송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시청시키는 것 등이 가능해졌다.

(2) 허락추정규정 창설

가. 배경

기본적으로 방송프로그램에 저작물이나 실연을 이용할 때는 권리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다. 동시송신등까지 할 때는 동시송신등에 관한 허락도 명확히 얻을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송동시송신등을 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다른 저작물로 대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는일러스트나 사진 등과 같은 차용 소재 저작물과 관련해서 자주 발생했고, 그 배경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한정된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리자와 충분한 계약교섭을 진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곤란하다는 것, 구두나 메일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방송 허락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 프로그램 제작 현장 특유의 실정이 있었다. 또한방송은 허락하면서 방송 동시송신등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시점과 맞지 않고, 시청자의 시선에서 방송과 동시송신등의 차이는 시청 단말기가 다르다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원활한 방송 동시송신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 허락을 얻을 때 방송 동시송신등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허락추정규정을 참설하였다.

나, 허락추정규정

허락추정규정은 방송·유선방송사업자와 저작권자가 방송프로그램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할 때, 저작권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송신등에서의 이용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제63조 제5항). 이 규정은 방송·유선방송사업자 중 자기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방송·동시송신등사업자를 통해 방송 동시송신등을 업으로 하고, 문화청 장관이 정하는 정보¹⁴를 일정 방법에 따라 공표한 자(특정방송사업자등)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또한 방송·유선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 동시송신등뿐만

¹⁴⁾ ①방송 동시송신등이 이루어지는 방송프로그램의 명칭, ②방송프로그램의 방송 및 방송 동시송신등의 시간대·기간, ③시청자가 방송 동시송신등을 시청할 수 있는 전송 플랫폼(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아니라 해당 방송사업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방송동시송신등사업자에 의한 방송 동시송 신등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방송 동시송신등은 지역 한정이 없는 개념이므로 추정 의 효과는 방송 대상 지역 외 방송 동시송신등에도 미치게 된다. 덧붙여 이 규정은 제103조 에 따라 저작인접권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허락추정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강제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권리자 측의 우려). 문화청 저작권과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특정방송사업자등이 저작물 등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와 방송사업자 쌍방의 의견도 고려해 2021년 8월 25일 '방송 동시송신등의 허락추정규정 해석·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15 이 가이드라인에는 ① 가이드라인의 취지·목적, ② 방송 동시송신등의 허락 시 기본적 사항, 16 ③ 허락 추정에 관계된 조건 등, ④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응, ⑤ 그 밖의 사항(주의 사항)이 담겨 있다.

(3) 레코드·레코드 실연 이용 원활화

종래 레코드(음원)·레코드 실연(음원에 수록된 가창·연주)을 방송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사전 허락이 필요치 않았지만, 동시송신등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사전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송신등의 이용 허락을 원활하게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원활한 이용 허락을 기대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이 때문에, 방송에서 사용한 레코드를 동시송신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우려·문제가 있었다. 참고로 저작권법 개정 당시 논의를 보면 음악 저작권 관련 권리처리 부담이 가장 컸고, 레코드 실연이 그 뒤를 이었다.

¹⁵⁾ 文化庁著作権課・総務省情報通信作品振興課、「放送同時配信等の許諾の推定規定の解釈・運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3年8月25日). (문화청 저작권과・총무성 정보통신작품진흥과、「방송 동시송신등의 허락추정규정의 해석・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1년 8월 25일))

¹⁶⁾ ②에서는 허락추정규정이 불명확한 계약을 권장하는 뜻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되도록 이용범위를 명시해 허락 교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약과 방송 동시송신등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 때에는 다시 계약 내용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서면(메일이나 SNS 메시지 등 전자적 기록 포함)에 따라 이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허락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표 1] 종래 레코드 및 레코드 실연에 관한 권리

방송(지상파)	동시송신	다시보기 송신	VOD
보수청구권 (사전 허락 불요) (제95조, 제97조)	허락권(송신가능화) (사전 허락 필요) (제92조의2, 제96조의2)		

이에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집중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청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활한 허락에 필요한 정보가 공표되어 있지 않아 동시송신등에 관한 이용 허락을 원활하게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레코드·레코드 실연¹⁷을 통상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제94조의3, 제96조의3). 보상금 징수·분배와 관련해서는 일원적인 창구를 마련하고, 당사자 간에 협의해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영상 실연 이용 원활화

종래 영상 실연(배우의 연기 등)을 방송에서 이용하거나 동시송신등에서 이용하는 때에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방송의 경우 첫 회 방송 허락을 얻으면 계약에서 특별 히 정한 게 없는 한 재방송은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특례(다만, 보수 지급은 필요)가 존 재하였다. 그 결과 재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동시송신등에서는 이용하지 못하는 우려·문 제가 있었다.

[표 2] 종래 영상 실연에 관한 권리

	방송(지상파)	동시송신	다시보기 송신	VOD
첫 회 방송	허락권 (사전 허락 필요) (제92조)	허락권 (사전 허락 필요) (제92조의2)		
2회째 이후	보수청구권 (사전 허락 불요) (제94조)	허락권 (사전 허락 필요) (방송과 같은 특례 규정은 없음)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방송과 마찬가지로 첫 회 방송에서 동시송신등의 허락을 얻은 경우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집중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이 용 허락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영상 실연은 통상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

¹⁷⁾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의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화청 장관이 정하는 방법(「음악권리정보검색」 등 상정)에 따라 원활한 허락에 필요한 정보가 공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함으로써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수청구권화). 또한 첫 회 방송의 동시송 신등 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첫 회 방송 시에 동시송신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실연가와 연락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은 때는 사전에 문화청 장관이 지정하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게 통상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상금청구권화). 관련해서 실연가와 연락하기 위한 조치¹⁸를 적절히 취한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화청 장관이 지정하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5) 재정제도 확충

방송사업자가 저작물을 방송에 이용하려고 권리자에게 허락을 얻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지원받아 통상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 저작물을 방송에 이용하는 게 가능하였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 을 배려한 것이었다. 그런데 동시송신등을 하는 경우는 재정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 에 동시송신등을 원활히 실시할 수 없다는 우려와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저작물을 방송 동시송신등에 이용하려고 권리자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재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저작인접권(실연·레코드 등)에 대해서도 재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2021년 5월 개정 저작권법의 영향

2021년 5월 저작권법 개정 전부터 시청 수요가 높았던 스포츠나 뉴스 프로그램을 동시 송신하는 대처가 주요 방송사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다.¹⁹ 그러나 저작물 등의 권리

¹⁸⁾ 실연가와 연락하기 위한 조치로는 (i)실연가의 연락처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는 것, (ii)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조회하는 것, (ii)예능 프로덕션 웹사이트 등에서 실연가에 관계된 정보가 공표되어 있지 않은지확인하는 것, (iv)실연기를 찾는다는 뜻을 문화청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는 것이다.

¹⁹⁾ 단 NHK는 2008년 12월부터 다시보기 · 온디맨드 서비스 「NHK 온디맨드」를 시작하였고, 2020년 4월부터 상시 동시송신 · 1주간 다시보기 서비스 「NHK 플러스」를 시작하였다.

[표 3] 저작권법 개정 전 민방사업자의 주요 서비스 현황

구분	닛폰 TV	TBS TV	후지 TV	TV 도쿄	
송신일 및 프로그램	2020년 10월 3일~ 12월 30일 (매일 밤 7시경~11시경)	2021년 1월 1일	2019년 9월 14일~ 10월 15일	월~금요일 아침 NEWS 모닝	
	일 TV계 라이브 송신(드라 마, 뉴스, 버라이어티 등)	뉴이어 역전 2021	월드컵 발리볼 2019	satellite	
시청 방법	TVer	Paravi	FOD 전용 애플리케이션 SPORTS BULL	TV 도쿄 비즈니스 온디맨드	
공통	2023년 1월 20일~24일 저녁 (16시경~19시경) 저녁 보도프로그램 / 시청방법 : TVer				

처리에 관계된 인력·노하우 부족 문제로 민영 방송사 대부분이 동시송신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다.

개정 저작권법이 방송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권리처리 문제를 상당 정도 해소한 후에는 각 민영 방송사가 민방 공식 텔레비전 포털 'TVer」을 비롯해 유·무료를 묻지 않고 다시보기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 구체적으로 닛폰 TV가 2021년 10월부터 TVer에서 매일 19시부터 23시까지 방송프로그램 동시송신을 시작하였고, TV 아사히·TBS·TV 도쿄·후지 TV도 2022년 4월부터 같은 시간대에 동시송신을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 방송사도 TVer에 프로그램 제공을 시작한 것 외에, 자사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동시송신·다시보기 등의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TVer은 2023년 3월 기준 BS·독립국을 포함해 전국 122개국의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송신 실적을 기록하였다. 현재 TVer 외에도 TADA·TBS FREE·넷도 테레토(무료), 테레아사 동영상·테레토BIZ·FOD(무료 및 유료), Hulu·TELASA(유료)가 다시보기·VOD 송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1

²⁰⁾ 민간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동시송신등 대처 현황은 放送コンテンツの制作・流通の促進に関するWG事務局,「取りまとめ骨子(案)」(令和5年8月9日), 67~70頁.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의 촉진에 관한 WG사무국, 「정리골자(안)」(2023년8월9일), 67~70p)

^{21) 2023}년 3월 기준 동시송신 서비스는 TVer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4. 마치며

일본은 시청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방송 동시송신등을 신속·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개별 과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방송 동시송신등을 방송과 똑같이 취급하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일괄 처리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방송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이슈 검토 시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예컨대, 동시송신등의 범위를 설정할 때 따라보기나 일정 기간 다시보기 등을 포함하고, 방송과의 지역 동일성을 묻지 않는 등 유연한 범위 설정함으로써 사업자가 다양하고 유연한 동시송신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시청자의 편의성과 시청 기회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동향은 디지털 시대 콘텐츠 전략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방송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개별 과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청자와 방송사업자 그리고 창작자 모두의 이익을 목표로 선제적·과감한 대응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방송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권리처리 과제 해결은 입법적 관점의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입법적 허들을 낮춰도 방송 동시송신등에 관계된 권리처리 노하우나 대응인력이 너무 미흡하거나 권리처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동시송신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정도 스폰서가 붙을지 알 수 없는 등비즈니스 모델로서 성립할 수 있을지 경영 판단이 곤란한 면도 있다. 이에 일본 총무성에서는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촉진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인터넷 송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논의 동향도 주목하면서 디지털 시대 국내 콘텐츠 전략을 논의해 나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총무성, 「2030년판 정보통신백서 : 새 시대에 요구되는 강인하고 건전한 데이터 유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2023), 200~2020 문화청 저작권과 · 총무성 정보통신작품진흥과, 「방송 동시송신등의 허락추정규정의 해석 · 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2021년 8월 25일)

이케무라 사토시,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전송등(1) : 권리제한 규정의 동시 전달 등에 대한 적용 확대, 허락추정 규정", '줄리스트」 2021년 12월호 (유비각, 2021)

류무라 전,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전송등(2) : 레코드 · 레코드 실연 및 영상 실연의 이용 원활하 등", 「줄리스트」 2021년 12월호(유비각, 2021)

방송콘텐츠의 제작 · 유통의 촉진에 관한 WG사무국, 「정리골자(안)」(2023년 8월 9일), 67~70p, 73p